문신사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2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 박주민·김남희·조 국

서미화 · 박홍배 · 강선우

장종태 · 박희승 · 이용선

김한규 · 황정아 · 정일영

한창민 · 김문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 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 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문신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문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문신사 업무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등록을 거 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라.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 바.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
- 사.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아. 문신업소 개설자가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 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함(안 제20조).
- 자. 행정처분이 확정된 문신업소 개설자에 처분 내용, 해당 문신업소 의 명칭 및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

- 차. 문신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경 우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23조).
- 카.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문신사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행복추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신행위"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글씨, 그림, 무늬 등을 새겨 넣는 행위를 말한다.
 - 2. "문신사"란 제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3. "문신업소"란 문신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① 문신사 는 「의료법」 제27조에 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문신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문신사 자격 등

- 제4조(문신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문신사의 자격을 갖는다.
 - 1. 제5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5조(자격시험) ① 문신사 자격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 ④ 문신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등록) ① 문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문신사의 업무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신사에게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한 절차·방법과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등록거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 부하여야 한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문신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중독자
- 3.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4.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자
- 5. 이 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8조(등록취소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업무정지기간에 문신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신사가 등록증 대여 등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 6.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소를 개설·운영한 경우
- 7. 제17조를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경우
- 8. 제18조를 위반하여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경우
- 9. 문신업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문신사의 업무를 한 경우
- 10.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 1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문신사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문신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 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다.
-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문신사가 아닌 자는 문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문신업소

- 제11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 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수 없다.
 - ② 문신업소를 개설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문신업소 개설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업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문신사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제13조(문신업소 개설자의 지위 승계) ① 문신업소 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문신업소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문신사가 아니거나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문신업소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14조(폐업 등의 신고) 문신업소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문신사의 의무 등

- 제15조(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① 문신사는 문신행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등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문신사 및 문신업소 개설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 멸균을 한 기구, 소독이나 멸균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서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이경우 소독 및 멸균의 기준·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문신에 사용하는 바늘은 1명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 3.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일 반의약품만을 사용할 것
 - 4.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서 배출할 것
 - 5. 손님에게 문신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정보와 부작용의 위험, 문신 후 관리와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할 것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제17조(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 문신사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문신업소 외에서 문신행위 금지) 문신사는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정처분 등

- 제19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위생 또는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문신업소 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상황, 시설, 제16조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영업 상황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

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소 개설자가 제16조 각 호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21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문신업소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문신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문신행위를 하게 한 경우
 - 4.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문신업소 개설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문신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위반사실의 공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문신업소 개설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문신업소의 명칭 및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23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
- 제24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신업소 의 등록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 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문신사협회) ① 문신사는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문신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문신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에 따른 문신사의 등록 없이 문신행위를 한 자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 아 이를 사용한 자
 -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대여 등의 행위를 알선한 자
 -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의 등록 없이 문신업소를 개설한 자
 - 6.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한 자
 - 7. 제17조를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자
 - 8.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를 위반하여 문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8조를 위반하여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자
-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문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를 위반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16조를 위반하여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 2. 제14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열람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